

2023. 12. 6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

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2133-5360

소비자권익보호팀장 정현영 2133-5374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6쪽

관련 누리집 ecc.seoul.go.kr

### 대출 안 되는 청소년·청년 노리는 '대리입금 피해' 주의하세요!

\* 대리입금(델입) : 사회관계망(SNS)으로 청소년 대상 게임 아이템·아이돌 굿즈 등을 대신 사거나 돈을 빌려주고 '수고비' 명목 고금리 이자 등을 받는 행위

- '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' 고금리 소액 대출 피해사례 중 20~30대 피해 최다
- 10대의 경우, 사회관계망(SNS) 등 통해 게임아이템 등 대신 구입해 주는 '대리입금' 피해 많아
- '공정거래종합센터' 불법 대부 피해상담·구제... 정부 '무료 법률지원제도' 안내도

# 중학생 박모 양은 게임을 하다 3만원 짜리 아이템을 대리로 구매해 주겠다는 사회관계망(SNS) 채팅(A씨)을 받았다. 박 양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먼저 구매해 주는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A씨 말에 넘어가 아이템을 구매했다. 이틀 뒤 카톡으로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간당 2천원씩 지각비(연체료)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사회관계망(SNS)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. 박 양은 결국 A씨가 연결해 준 불법대부업자에게 6만원을 빌려 상환, 협박에 시달리다 4일 후 4,562%에 이르는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 9만원을 상환했다.

# 20대 대학생 이모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다. 얼마 후 B씨(불법 대부업자)가 전화를 걸어와 이 씨의 직업, 나이, 주소 등을 물었고 2시간 뒤 이 씨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. B씨는 이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, 친구 등 지인 10명 가량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서 일주일 뒤 50만원(3,476%)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빌려줬다. B씨는 이 씨가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추심을 지속했고, 이씨는 한 달 뒤 이자율 10,800%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갚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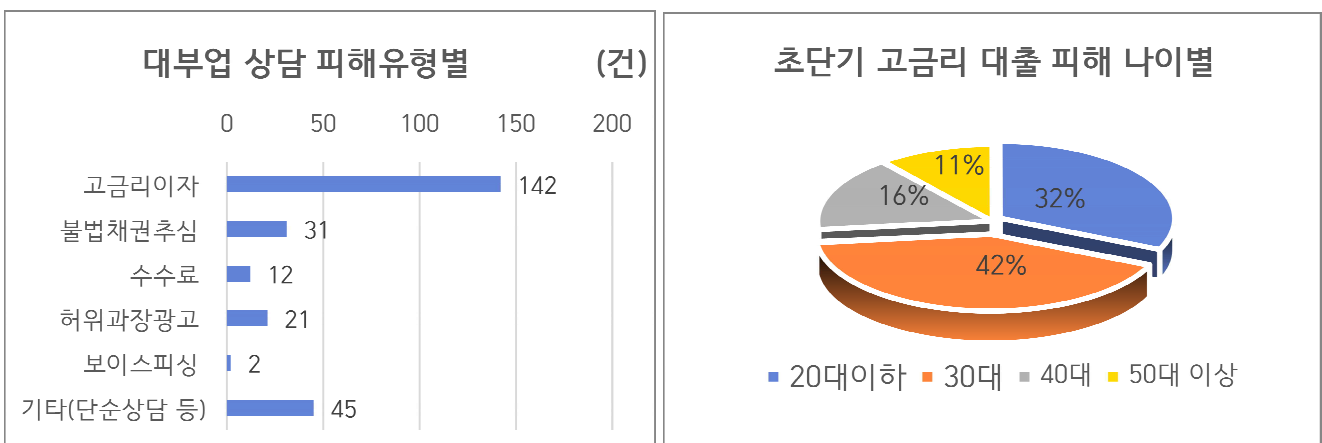
서울시는 연말연시와 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대부업자의 '고금리 소액대출 피해'가 심각하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- 이러한 피해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·청년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을 악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준다고 접근(대리입금)하거나,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유도한 후 불법대부업자로 연계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,
- 연체이자를 시간당 수취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가족, 지인, 사회관계망(SNS) 등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.

〈20~30대 ‘고금리 소액대출’ 피해 최다… 10대는 사회관계망(SNS) 등으로 접근하는 ‘대리입금’ 유야〉

□ 서울시가 올해 1~10월 중 ‘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’에 대부업과 관련해 접수(253건)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, ‘고금리 소액 대출’ 상담이 142건(56.1%)으로 가장 많았고 ‘불법 채권추심’은 31건(12.3%)에 이르는 등 전체 상담 중 68.4%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- 연령별로는 30대(42%), 20대 이하(32%), 40대(16%), 50대 이상(11%) 순으로 상담자 중 30대 이하가 74%를 차지했다.



〈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피해상담 현황〉

- 온라인을 통한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①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

전화 유도 ②30만원 내외 소액을 ③7일 이하 단기로 대여 ④현금·채무자의 체크카드,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.

- 상환일을 넘기면 추가 대출(일명 ‘꺾기’)로 1~2달 만에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,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도 이어지기도 했다.
- 특히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출받는 ‘비상금 대출’ 경우도 편리한 대출 과정 전 반드시 자신의 상환 여건을 따져봐야 높은 연체율에 또 다시 대출받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다.

□ 또한 10대들에게는 게임 아이템, 아이돌 상품(굿즈)를 구매해 준다며 사회관계망(SNS)이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, 시간당 지각비·수고비(연체료)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·개인정보 유출, 폭행,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‘대리입금 피해’도 많았다.

- 개인 간 10만원 이하 금전거래는 법정 최고이자율 20%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짧은 기간 빌려주고 수고비로 높은 이자를 받는 ‘대리입금’도 지속 여부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로 분류돼 ‘대부업법상 위법행위’이다.

□ 시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실행 전 ‘등록 대부업체 여부’를 반드시 확인하고,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.

\*등록된 대부(중개)업체 등록여부 통합조회서비스(금융감독원, 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  
(조회서비스 접속)서민금융1332→ 금융회사조회→ ‘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’에서 확인

-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알려질 것이 걱정되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응방법에 따라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.

〈청소년 대리입금 대응방법〉

※ 본인 및 가족, 지인의 **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거절**하세요!

- ① 학교전담경찰관, 선생님, 부모님에게 도움 요청
- ② ‘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’ 신고(sftc.seoul.go.kr 또는 ☎1600-0700→ 4번)
- ③ 즉시 경찰 신고 (☎112, 인적사항 생략 또는 가명 조사 가능)

<‘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’ 각종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, 정부 지원제도 연계 지원도>

-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한 경우, ‘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’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,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‘부당 이득금 반환’ 또는 ‘잔존채무 포기’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구제 지원한다.

\*2023년 1월~10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피해구제 : 37건, 178백만원

- 또한,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「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」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.
- 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’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를 말한다.

□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“최근 사회관계망(SNS), 메신저 등을 즐겨 이용하는 청소년·사회초년생을 노리는 ‘불법 소액대출 피해’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”며 “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사례, 주의사항 등 예방교육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〈 불법 고금리 소액대출 시 소비자 주의사항 〉

① 소액·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\*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

※ 소액생계비대출(서민금융진흥원 [www.kinfa.or.kr](http://www.kinfa.or.kr), 1397)

② (불가피하게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)

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,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\* 후 거래

※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(fine.fss.or.kr) 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」를 통해 등록대부업자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

③ 불법채권추심 문자,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

※ 불법추심 피해발생(우려) 시 금감원(☎1332→3번)·경찰(☎112)에 신고

이런 경우는 “불법추심” 행위에 해당합니다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   | ⑥ 가족·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|
|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   | ⑦ 협박·공포심·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    |
|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    |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  |
| ④ 야간(저녁 9시~아침 8시) 전화 또는 방문 |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      |
| ⑤ 가족·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| ⑩ 법적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     |

〈 피해상담·신고 및 기관별 연락처 〉

|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| 기관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| 홈페이지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피해상담·신고              | 서울시<br>공정거래종합상센터 | ☎1600-0700<br>(4번) | <a href="https://sftc.seoul.go.kr">https://sftc.seoul.go.kr</a> |
| 서민금융상품 이용문의          | 서민금융진흥원          | ☎ 1397             | <a href="http://www.kinfa.or.kr">www.kinfa.or.kr</a>            |
| 피해신고·고소<br>(신변보호 신청) | 경찰               | ☎ 112              | <a href="http://www.police.go.kr">www.police.go.kr</a>          |
| 채무자대리인 신청            | 금융감독원            | ☎ 1332(3번)         | <a href="http://www.fss.or.kr">www.fss.or.kr</a>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구조공단           | ☎ 132              | (유선접수만 가능)  |

## 붙임1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 소액 고금리 대출 사례

### <‘대부중개플랫폼’ 사례>

- ▶ 대부중개플랫폼업체 → 검색 광고배너 클릭 또는 문의글 게시 → 통화시도 → 등록대부 업체 직원 수신
- ① 대부 적격 시(담보 또는 신용이 가능) → 등록대부업체 진행
- ② 대부 부적격 시 → 등록대부업체의 전화번호가 아닌 **담당자(불법 대부업자)**에게 전화 음 → 대출승인 유인 → 연결 시 **초단기 불법 대부 피해**



☞ 위 내용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